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의안번호 16597
- 발의 : 우원식 인재근 장하나 배재정 은수미 이인영 한정애  
이윤석 이개호 이미경 김현미 박민수 김성곤 의원  
(13인)

2015. 9. 14



담당 | 정명희 (녹색연합 정책팀) 직통: 070-7438-8529 이메일 : greennews@greenkorea.org  
황인철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팀장) 직통: 070-7438-8523 이메일: hic7478@greenkorea.org

## 1. 들어가며

지난 8월 28일 우원식 의원 외 13인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4597)을 발의하였고 이 법률안이 8월 31일 입법예고 되었다.

이 법안은

- 환경부를 제외한 기획재정부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제외시킬 것과
- 환경부장관은 공원관리청에게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 국가는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공원별 보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조사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녹색연합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

- 자연공원이 공원위원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분명히 하여 지자체나 사기업의 개발욕구에 의해 자연공원이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막고
-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구체적인 보존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며
- 자연공원이 자연공원법의 목적인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의 취지에 걸맞게 관리 보호되는 것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이 법안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힌다.

## 2. 법률안에 대한 세부 의견

### ○ 우원식 외 12인 -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법률 제안 이유 및 제안 내용

#### <제안배경>

현재 국립공원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등 정부 측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 측의 입장이 정해진 안건에 대하여는 심의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부 측의 당연직위원의 수를 줄이고, 자연공원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위원의 수를 늘림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는 국립공원을 제외한 시·도지사 및 군수가 지정·관리하는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에는 예산이나 인력의 부족으로 자연자원을 조사하지 못하여 생물종 전체의 통계가 없거나 부실한 경우가 많고, 부문별 보전관리계획 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운영 실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자연자원조사 및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취지를 고려하면 그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그 훼손가능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허용행위의 기준을 ‘탐방객의 유입과 집중을 초래하는 등 공원자연보존지구를 훼손할 우려가 없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부를 제외한 기획재정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을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에서 제외시키고, 민간위원의 수를 늘려 전문성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9조).

나. 환경부장관은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수립한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이 공원계획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7조의3 신설).

다.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을 ‘탐방객의 유입과 집중을 초래하는 등 공원자연보존지구를 훼손할 우려가 없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으로 구체화함(안 제18조제2항제1호).

라.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조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 ○ 녹색연합 법안 세부 의견

-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5조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에서 국립공원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법에서 정한 위원의 자격은 ①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②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③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④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중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⑤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이다. 이 중 ①과 ②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 10여명은 정부 측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 국립공원위원회는 국립공원의 지정부터 관리, 폐지, 공원계획변경 등 제반 사항을 심의하며 특히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해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무엇보다 자연공원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현행 법의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에선 정부 측 공무원들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어 각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심의가 진행되거나 정부가 이미 정한 공원개발 사업에 관해서는 일방적인 결정을 강행할 수 있는 비민주적이며 불공정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생태계와 문화경관에 대한 전문적 의견이 행정의 요구에 따라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따라서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의 수를 줄이고 자연공원에 관한 전문성을 지닌 민간위원의 수를 늘려 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리고 국립공원이 그 지정 취지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21개소, 도립공원 30개소, 군립공원 27개소로서 모두 78개소이다. 이 중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은 폐지와 축소에 관해서는 환경부 장관이 승인권한을 갖고 있지만 다른 모든 관리 부분은 지자체에 일임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상황, 특히 예산 상황에 따라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의 관리에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예산을 이유로 공원계획 수립이나 자연조사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자연공원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타개하고 자연공원이 목적에 걸맞게 관리되기 위해서는 도립, 군립공원의 공원관리청이 공원별 보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법제화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 자연공원법에선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을 자연공원의 구역 중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해 놓고 있다. 이 곳은 우리나라 자연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적, 자원적, 문화적, 환경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서 이용에 대한 고려보다는 보존을 위한 최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현행법에선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조차 몇 가지의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은 그 타 조항이 안전성이나 복원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인 것에 비해 여러 해석이 가능해 자칫 공원자연보존지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시행령이 본법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개정안이 제시하는 행위의 기준을 ‘탐방객의 유입과 집중을 초래하는 등 공원자연보존지구를 훼손할 우려가 없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으로 구체화하여 자연공원보존지구가 철저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와 같은 이유로 녹색연합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4597)이 자연공원이 자연공원법의 목적인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의 취지에 걸맞게 관리 보호되는 것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며 찬성 입장을 밝힌다.

---

## (사)녹 색 연 합

공동대표 : 유경희, 박그림, 유경희, 원정, 김혜애

홈페이지: [www.greenkorea.org](http://www.greenkorea.org)

주소 : 136-821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9길 15 녹색연합

전화 : 02-747-8500

담당 | 정명희 (녹색연합 정책팀) 직통: 070-7438-8529 이메일 : [greennews@greenkorea.org](mailto:greennews@greenkorea.org)

황인철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팀장) 직통: 070-7438-8523 이메일: [hic7478@greenkorea.org](mailto:hic7478@greenkorea.org)

---